

2020-11호

11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행복한 **행복의정**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타 시·도 의회 주요동향

최근 제·개정 법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

2020-11호

11



Contents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07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 09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개정 조례

- 13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 15 여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및 운영 조례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19 충남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정토론회
- 29 충남형 스포츠 복지정책 운영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 42 소하천 수질 개선 및 생태환경 보존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54 금산 인삼산업의 미래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62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생 상담 방향 의정토론회
- 70 내포신도시 10년 문제점과 충남혁신도시 발전방안 의정토론회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 81 서울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2021년도 서울시 ·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
- 85 대구시의회, 지방소비세율 조정 촉구
- 87 대전시의회, 중소기업벤처부 세종이전 반대 항의방문

최근 제 · 개정 법령

- 9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 97 충청남도 예산군 「지방자치법」제91조2항 등 관련 질의
- 104 강원도 고성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관련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1호

01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1. 부산광역시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시행 2020. 11. 11.] [부산광역시조례 제6271호, 2020. 11. 11.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을 육성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리운전”이란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자동차를 대신 운전하여 그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2. “대리운전업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9호에 따른 대리운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대리운전노동자”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제9호에 따른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이란 대리운전 수요 정보를 수집하여 대리운전노동자에게 제공하고 호출에 응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가 개발 운영하는 공공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대리호출 공공플랫폼 구축·운영) ① 시장은 대리운전업자의 운송질서의 교란행위를 방지하고 대리운전노동자에 대한 수익 부당 편취 등을 방지하며, 대리운전노동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호출 공공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플랫폼 운영 수익금을 대리운전노동자의 이동노동자쉼터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④ 플랫폼 운영 및 비용산정에 관한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준수사항 배포) 시장은 대리운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업자 및 대리운전노동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7조(대리운전노동자 교육) ① 시장은 대리운전노동자의 서비스 증진 및 대리운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안전 관련 법령, 응급처치의 방법 및 대리운전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경기도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1. 12.] [경기도조례 제6786호, 2020. 11. 12.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로 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진출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
3. “복귀”란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진출기업은 해외사업장을 유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장을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신설·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4. “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 가. 복귀를 통하여 신설·증설된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 나. 복귀를 진행중인 기업으로서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는 등 법 시행령 제4조의 절차를 진행중인 기업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해외진출기업의 경기도 내 복귀를 유도하고 복귀기업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외진출기업 복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복귀기업 지원과 도내 복귀 촉진을 위하여 경기도 복귀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귀기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업종별 복귀 수요에 관한 사항
3. 해외진출기업의 복귀 활성화 방안
4. 복귀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복귀 촉진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복귀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금 및 입지지원) ① 도지사는 복귀기업에 대하여 고용창출 규모, 첨단업종 여부 및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인력지원) ① 도지사는 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도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도지사는 해외진출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해외사업장의 청산·양도 또는 축소 등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2개 이상의 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복귀를 하는 경우 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종·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
2. 도에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사업장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것

② 도지사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1호

02



최근 기초 자치단체 제 · 개정 조례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여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및 운영 조례

1.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1. 2.] [성남시 조례 제3542호, 2020. 11. 2.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도록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되도록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 주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이 허용되지 않은 장소는 이용하지 않는 등 이용자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주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주민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대한 연도별 실태조사
5.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범구역 조성)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성남시 관내에 시범구역을 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실시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및 교육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및 운영 조례

[시행 2020. 11. 3.] [여수시 조례 제1553호, 2020. 11. 3. 제정]

주요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소통 및 사무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에게 TV 등의 문화 서비스 제공
3. 이동노동자에게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 연계

③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개관 및 휴관) ① 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2. 그 밖의 센터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시장이 정하는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시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리) 시장은 컴퓨터 이용자가 컴퓨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보고 및 조치하게 할 수 있다.

1. 컴퓨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
2. 음주, 흡연 또는 도박을 하는 경우
3.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위탁) ① 시장은 컴퓨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컴퓨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컴퓨터의 위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컴퓨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1호

03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남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정토론회

충남형 스포츠 복지정책 운영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소하천 수질 개선 및 생태환경 보존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금산 인삼산업의 미래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생 상담 방향 의정토론회

내포신도시 10년 문제점과 충남혁신도시 발전방안 의정토론회

충남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정토론회

〈20. 10. 17.(토), 10:00~12:00 / 충남콘텐츠기업지원센터 이벤트홀〉



I

총 평

(김 연 의원)

- 금번 토론회는 국회와 충남도의회, 천안시의회가 공동주관한 자리로 천안시에서 선도사업으로 운영 중인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서비스 관련 전문가와 관계기관 실무자, 관계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 충남형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선도사업의 개선방향과 발전과제를 모색하였으며,
 - 선도사업의 추진현황과 실무자와의 논의를 통해 지역과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을 보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 나아가 서비스 전달인력의 교육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교육과 데이터 공유 및 소통채널의 확대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음.
 - 또한 선도사업의 성공을 위해 행정적 지원과 시의회와 도의회, 국회가 함께 협력해야 하며, 충남형 모델을 준비하기 위한 전담팀과 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① 주제발표(2인)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기존 돌봄서비스에서 드러난 다양성 부족, 제한적 자격요건, 공급 부족 문제 등의 대안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가 대두됨.
- 천안시 선도사업을 통해 대상자 맞춤 서비스 제공의 가능성이 확인됨.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로 추진할 기반을 다지고, 서비스 공급부족 완화, 생활지원 제공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한 확대 가능성이 나타남. 개선과제는 아래와 같음.
 1. 통합돌봄 서비스 기관 간의 정보연계 부족
 2. 지역사회와 지자체 및 민간의 역량 부족
 3. 건강보험·요양보험 등과 연계 부족
 4. 지역주민과 사회의 주도적인 참여 부족
 5. 중앙정부, 지자체의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6. 사례관리와 충남형 모델 구축에 필요한 예산, 인력 마련 필요
 7. 통합돌봄 생태계의 주요 축으로서 민간과 지역주민의 참여 필요
 8. 서비스 이용자는 단순 수혜자가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 노력 필요
- 개선과제 해결 및 통합돌봄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민간,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공동의 목표를 갖고 협력해야 함. 사례연구를 체계화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전문인력과 예산확충이 필요함. 또한, 시·도의회와 지자체, 중앙정부가 맡아야 할 과제를 명확히 구분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정덕진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원>

- 천안시 통합돌봄은 선도사업으로 노인의 삶의 질과 인권을 증진하며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함.
- 수요와 돌봄 인프라 등 지역특성에 기반한 통합돌봄이 필요함.
- 수요자 중심의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커뮤니티 케어의 기본 방향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제안해야 함.
- 북부권과 내륙권, 서해안권, 금강권은 맞춤형 대응이 필요함.
- 노인주거복지시설 인식개선과 공급량 확대 필요,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대상과 품목의 확대도 필요함.
- 전체 3,667개 의료기관 중 천안에 1,075개가 운영 중임. 지역 간 의료기관 편차가 크고 병상 수와 의료인력 분포도 이와 유사함.
- 권역별 노인복지자원 관리시스템 운영, 독거노인과 정신건강 취약 노인 밀착관리시스템 운영, 맞춤형 의료전달 시스템 운영, 향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예방적 접근 및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필요함.

② 지정토론 (5인)

① 김지연(아우내은빛복지관 전담사회복지사)

- 복잡한 통합돌봄 신청절차 개선이 시급함.
- 지역별 근무여건 격차 해소가 필요함.
- 관계기관 간 소통 채널이 필요함. 기존의 치매안심센터, 노인보호 전문기관 등과 연계도 필요함.
- 생활지원사는 자격요건이 미흡해 질 저하 문제가 초래됨.
- 근무하고 싶은 분야가 되도록 근무조건, 처우개선, 인식개선 필요함.

② 이남훈(이남훈한의원 대표원장)

- 방문진료 프로그램 운영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 대상으로 한의사가 진료하는 사업을 진행함.
- 한방은 장비필요가 적어 방문치료가 수월한 장점이 있음.
- 방문진료 만족도가 높음. 대상자가 보험에 가입할 필요도 있음.
-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배상 문제도 논의가 필요함.

③ 김아름(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팀장)

- 맞춤형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있음.
- 중복혜택자를 줄이기 위한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
- 세입자의 경우 서비스 제공,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가 문제 될 수 있음.
- 시외권 대상자의 거주지 이전 지원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공사기간 중 거주할 생활공간이 필요함.
- 전문인력을 공급해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 있음.
- 일정 기간에 대상자 모집 후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 있음.

④ 전민선 천안의료원 공공의료지원센터 센터장

- 천안의료원은 가정간호사업,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의료기관 퇴원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재정지원과 인력확보 및 원활한 업무협조가 필수임.
- 환자의 처지에 대한 고려와 심리적 갈등해소, 가족구성원들과의 갈등관계를 해결하려는 개입이 병행돼야 함.
- 보호자 교육을 통해 사업 이해도를 높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는 방법의 논의가 필요함.
- 환자정보 공유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⑤ 정경록 (주)천안돌봄사회서비스센터 대표이사

- 통합돌봄 사업의 법제화 필요, 또한 대상자를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로 보편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 있음.
- 거주지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주거시설 필요함.
- 민·관 협력구조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조성 필요.
- 돌봄서비스 매뉴얼 마련이 중요함. 업무범위를 규정해 혼선을 막고 어르신 개개인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함.

③ 청중토론

[질의: 청중 1(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 공동체 기본조직은 가족이고 통합돌봄에는 가족에 대한 복지나 케어 부분이 빠져있음.
- 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어르신의 등급판정에 수개월이 소요됨.
-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여가서비스, 노인건강체육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봄.

[답변: 발제자 1(이용재 호서대학교 교수)]

- 천안시와 주기적인 컨설팅을 통해 선도사업을 개선하고 있음. 노인정신건강, 가족돌봄 등 중요한 부분들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문제로 반영이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 최근 치매등급판정은 보통 30일 이내에 완료되고 있음. 장기간 소요된 사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임.

[질의: 청중 2(박완주 국회의원)]

- 다음에는 천안시나 충청남도 담당자들이 자리해주기 희망함.
- 참여기관별로 개선과제를 다르게 파악하고 있음. 오늘 제기된 개선방향에 대해 정리하고 지자체와 광역, 전국단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각 단위별, 시기별 타임스케줄을 만들어 추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함.
- 선도사업에서 나온 공과 과에 대해 의미있는 지적을 종합해 후속작업을 이어가길 바람. 책임담당자를 두고 향후 과제를 공유해야 할 필요가 있음.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겠음.
- 2차 토론회를 통해 입법과제, 조례개정사업 등 복지부와 통합돌봄을 어떻게 지속추진할 것인지 협의가 필요함. 긍정적인 성과가 도출돼야 단계별로 확대가 가능함. 이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이어가고 지역별로 경험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함.

[답변: 발제자 2(정덕진 충남사회서비스원 연구원)]

-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성과와 데이터를 공유하는데 공감하고, 서비스 이용자도 단순 수혜자가 아닌 자주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 참여하는 주체가 돼야 함.
- 오늘 주신 논의를 앞으로 진행될 통합돌봄 연구에 반영하겠음.

[답변 : 좌 장 (김 연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 서비스 제공기관에 의사결정권이 부족해 행정절차를 거치며 비효율, 인력손실, 서비스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함.
- 모든 서비스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공적영역으로 가져갈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해 비효율성을 줄여나가야 함.
- 선도사업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데이터 및 자료공유가 중요함. 관련기관들 간의 소통채널을 확보하고 통합돌봄 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임.
- 담당자를 두고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데 공감하고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향후 토론회와 단위별 추진방안 마련하겠음.

[답변: 발제자 1(이용재 호서대학교 교수)]

- 시도의원 및 정부 관계자 분들께 드리는 말씀임. 통합돌봄 서비스의 핵심은 지속가능성이고 이와 관련해 정부가 마주한 과제는 관련 예산확보임.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 진행할지라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을 연계할 필요가 있음. 이 부분의 논의가 마무리 되는 대로 향후 사업의 예산확보가 진행될 것임.
- 조례제정과 예산확보에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함. 나아가 지역사회를 위한 투자사업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충남형 통합돌봄모델을 마련해야 함.

[질의: 청중 3(고일환 충남사회서비스원 원장)]

- 오늘 제기된 개선과제들 집약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임. 천안 북부권의 노인돌봄시설 부족에 대해 종합복지관 설치 예정임. 그러나 운영에 관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함.

- 오늘 제안된 개선과제들 사회서비스원에서도 고민하고 개선방안 제시하겠음.
-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치매등급 신청은 개인이 신청하면 접수가 어려움. 보호센터 전문가를 통하면 유리하게 나옴.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등급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후속조치 필요함.

[답변: 발제자 1(이용재 호서대학교 교수)]

- 파트너들이 주기적인 컨설팅 자리를 갖고 개선 중임.
- 치매등급판정과 관련해 관련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기관 간의 업무연계에 사회서비스원의 지원이 필요함. 향후 지역사회 투자사업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해 사회서비스원과 협업이 필요함.

[질의: 청중 4(박민애 천안시청 통합돌봄 팀장)]

-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대해 논의된 문제점, 건의안들을 소통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로 소통에 어려움이 발생함.
- 천안시에서 통합돌봄 관련 조례제정을 준비하는 중임. 오늘 논의된 내용을 담도록 노력하겠음.

[답변 : 좌 장 (김 연 행정문화위원회 의원)]

- 천안시의 경우 돌봄서비스 대상자가 주로 외곽지역에 몰려있어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전담사회복지사 1인당 관리대상자가 200명이 넘는 등 인력 부족문제가 발생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 수요자 분포를 반영한 인력 배치가 필요함.
- 통합돌봄 서비스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치매예방 교육, 기본간호방법, 재활지도 등 일정한 교육을 수료해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도 있음.

III 토론회 결과

<도출과제>

- **지역특성과 현장의 의견 반영한 선도사업 개선안 마련 필요**
 - 수요자 분포, 의료기관 분포 등 지역특성 고려한 자원배치 필요
 - 전담복지사 1인당 관리대상자 수 등 현장근로 조건 개선 필요
 - 생활지도사 역량강화(치매예방교육, 기본재활교육 등) 필요
- **통합돌봄 선도사업 성공을 위한 관련기관 간 협력채널 강화 필요**
 - 업무연계에 따른 데이터 공유, 돌봄 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 필요
 -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을 위한 사례연구, 전담인력 필요
 - 선도사업 이후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적 준비도 고려할 필요

<결 론>

-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성공을 위한 관련기관 간의 협력강화와 수평적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행정적 지원이 병행돼야 함.**
 - 마련된 개선안을 토대로 천안시청, 충청남도, 국회의 협력업무 추진 필요
 - 선도사업 성공을 위한 천안시, 충청남도의 행정적, 제도적 지원 필요
 - 지역사회와 지자체의 통합돌봄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뒷받침 필요 (정보교환, 통합돌봄 가치 공유, 복지서비스 업무연계 등)
- **선도사업을 통해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마련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함.**
 - 기관 간 의사소통 채널 확보, 통합돌봄 데이터 베이스 구축 필요
 - 건강보험·요양보험 등과 연계를 통한 예산확보 대안 마련 필요
 - 선도사업 성공을 넘어 충남형 통합돌봄 모델 구축 위한 사례연구, 전담 연구팀 조성 필요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국 회(박완주 의원실)
 - 충청남도(사회복지과)
 - 천안시청(복지정책과)

충남형 스포츠 복지정책 운영 방안 모색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20. 10. 22.(목), 14:00~16:00 / 충남도의회 108호〉



I 총 평

(정병기 의원)

- ❖ 금번 토론회는 도민,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 스포츠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충남의 특성에 부합한 **충남형 스포츠 복지정책 운영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 관련 전문가, 업무 관계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문제점을 진단하고 주제를 중심으로 전문가적 입장에서 토론을 벌였으며,

- 충남 스포츠복지 진흥과 발전을 위한 지향점이 구체화되는 계기가 되었음.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김민준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

-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스포츠 정책 필요
 - 생활체육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유소년(0~9세)과 관련된 자료 미흡
 - 100세 시대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도 노인 인구는 70세 이상으로 한정
 - 충남도 생활체육참여율은 전국 10위(63.3%)수준
 - 특히, 40대(53.3%), 10대(57.3%), 50대(60.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생활체육 참여율 저조
 - 전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활스포츠정책과 실태조사 필요
- 수요자 중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필요
 - 충남도의 공공체육시설 24개 유형을 모두 포함 1,522개소로 전국 7위 수준이며 이중 간이 운동장(마을체육시설)이 73.1%임
 - 충남도의 공공체육시설(생활체육관+수영장)은 29개소로 1백만명 당 13.7개소임(전국 17위)
 - 선진국 대비 시설 공급 수준 열악(일본: 체육관 1.5만 명 당, 수영장 2.9만명 당 1개소/ 노르웨이: 체육관 1.7천 명당, 수영장 5천 명당 1개소)
 - 수요자 중심형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필요
 - (디지털뉴딜)스마트체육관 조성에 대한 수요조사 필요

- 다양한 마을중심형 스포츠클럽 구성과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 우리나라는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과 스포츠 복지 실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중점 둘 필요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향후 야기될 선수 부족 문제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스포츠클럽 조성
 - 충남 학생선수와 팀은 2019년 대비 선수는 288명, 팀은 39개 감소
 - 충남 스포츠클럽은 총 9개소로 (국비)공공 6개소, (도비)거점 3개소임
 - 충남 15개 시군 중 5개 시군만 스포츠클럽 조성
 - 스포츠클럽 3년 지원, 향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부족
 - 스포츠클럽 구성과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 소외계층 생활체육지원 강화
 - 여전히 다양한 계층의 스포츠 참가에 대한 편차 존재, 도민의 고른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음.
 - 계층별 스포츠활동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 강화 필요
- 민간체육시설업 지원을 위한 정책 필요
 - 충남도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체육시설 중 민간체육시설은 2위(17.9%)
 - 충남 민간체육시설업은 2016년 2,263개소에서 2018년 1,816개소로 지속적 감소 추세
 - 특히 코로나(20.1.19.~20.8.31. 기준) 이후 충남의 민간 체육시설업은 96개소 폐업
 -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민간체육시설업 지원을 위한 정책 필요
- 스포츠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스포츠 정보 체계화
 - 국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중복응답)는 주변에 있는지 잘 알지 못해서(62.6%)임.
 - 도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44.9%), 체육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15.8%)순으로 나타남.

-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저장하고 수혜자(일반, 선수/지도자) 민간체육시설업자, 정책관련자 등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 가능하고 소통할 수 있는 스포츠 아카이브(플랫폼) 구축 필요

② 지정토론(4인)

① 이정학(경희대학교 체육대학 교수)

- 최근 국가 정책 방향은 경제, 기후, 위생 등 다양한 환경요인의 장벽 속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을 요구받고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스포츠 활동의 중심이 비대면으로 탈사회화, 탈공간화 시대에 직면함.
 - 따라서 스포츠정책 방향도 기존의 가치체계에서 탈피하여 시대적 변화의 요청에 부합한 가치체계의 모색이 요구되고 있음.
- 충남도민 생활체육조사와 수요자 중심의 시설확충 필요
 - 수요자 지향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효과적 정책 수립을 위한 준거의 틀이 될 것임.
-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비대면 장애인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 및 제공 필요
 - 그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하며 충남의 스포츠복지 구현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행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스포츠정책은 수요자관점에서 요구되는 서비스 제공 필요
 - 시대적 변화를 폭넓게 수용하면서 정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실행방안으로 수립되어야 함.

② 노태현(체육진흥과장)

- 우리나라는 현재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였으며, 특히 평균 수명은 증가한 반면 건강수명은 담보상태로 지속적으로 격차 발생

- 충남도 주요 추진 정책
 - 생활체육 인프라 확보 추진,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지속 지원,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확대 배치, 사회적 소외계층 건강생활 지원
- 생활체육 참여환경 조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공공체육시설 확대
 - 도민의 지속가능한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와 혜택 제공
 - 마을단위 동네체육시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등
- 수요자 맞춤형 신규체육프로그램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 도민들에게 흥미와 참여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함.
 - 생애주기별 연령, 성별, 체력, 거주환경 등
- 도민에게 양질의 스포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추진
 - 스포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육지도자(생활 및 장애인)의 지속 확대 및 처우개선
-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 복지를 실현
 - 충남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포츠이용권 확대
 - 맞춤형 운동처방을 통한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갭을 줄이고자 노력
 - 어르신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신규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

③ 최진혁(충청남도체육회 체육진흥부장)

- 건강수명 증진을 위한 전 도민 건강 인센티브제 추진
 - 자체 사업인 도민행복건강기 ‘건강주’를 활용해 1주일에 7만보 달성 시 일정한 포인트를 제공하여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월 목표 걸음수 20만보 이상 달성 시 소정의 농산물 상품권 등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동기부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
- 사회배려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종목별 스포츠교실 운영

- 전문 외부강사를 채용하여 도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765명에게 티볼(Tee Ball) 프로그램을 연중 지도하며, 각종 스포츠이벤트 제공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냄.
- 엘리트 학생선수 육성을 위한 충남형 스포츠클럽인 지역 거점형 스포츠클럽 사업 운영
 - 비인기 종목 중 하나인 육상과 보령지역의 특화종목인 요트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비인기종목 활성화의 대안으로 제시
- 충남형 스포츠 복지에 대한 정책 제언
 - 충남 종합스포츠정보망 구축
 - 지역 주민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학교 체육시설 개방 장려안 마련

④ 최재섭(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팀장)

- 스포츠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스포츠 정보 체계화에 대한 제언
 -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홍보하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할 필요 있음.
 - 최근에는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 등 다양한 SNS홍보를 활용하고 있지만 장애인들에게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한 플랫폼 홍보가 필요하고 장애인들의 정보 습득 경로를 참고한 홍보 방법도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과 이동권 확보를 통한 활성화 필요
 - 장애인 체육시설을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동권 확보가 최우선으로 먼저 선행되어야 함.
 - 이동성 확보는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참여율을 높이는데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임.
 - 도비와 시군비 매칭 차량지원 사업이 필요함.

- 장애인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리그를 통한 체육 활성화
 -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와 움직이는 체육환경을 제공함으로 흥미를 유발해야 함.
 - 대회 출전을 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참여하여 장애인 안에서 또 차별받지 않는 운영방식으로서의 개선이 필요함.

3 종합토론(질의답변)

- 모든 정책수립이 수요자 중심의 근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만 효율적이고 정당함. 자료수집은 모든 정책에 있어 중요하고 기본임. 매년 연속성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져야함.
- 사회패러다임에 편승하고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사 자료가 있어야함. 코로나19 현상으로 더 많은 사회적 장벽요인이 생기고 스포츠에서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주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내용과 조사 시스템을 정책적으로 마련해야함.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한다면 충남은 더 풍요로운 복지정책을 만들게 되고 도민에게 있어서는 개연성, 당위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정기적 조사에 실행 여부에 대해 말씀 부탁함.

[질의 : 경희대학교 체육대학 이정학 교수]

⇒ 정기적, 지속적인 데이터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의회에서 노력하겠음.

[답변 : 충남도의회 정병기 위원장]

⇒ 데이터 관리가 관건인데 자료는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틀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음.

[답변 : 체육진흥과 노태현 과장]

- 충남도 체육시설 이용실태조사, 시설확대를 위한 조사 등 그동안 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 등 준비해 왔음. 이후 연구와 관련하여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음. 연구에 활용될 관련 자료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함.
- 도민에게 일반화된 정보제공이 필요함. 정보에 대해 “체육관련 정보를 60~70%가 받지 못했다”라는 결과가 있었음. 체육인프라와 관련한 기본 데이터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데이터 확보가 필요함. 이번 달 내에 체육활동한 동호인이 몇 명인지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데이터 구축에 힘써 달라.
- 체육시설 사용은 주민의 생활의 일부임. 도민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교육청의 일이 아니라 도가 책임져야 함. 그러기 위해서는 시설투자를 해야 하는데 예산의 여유가 없음. 기존 기반시설 활용도 최대한 높여야 함. 그것이 학교운동장과 강당임. 현안사업비로는 한계가 있음. 보편화의 필요성 있음. 학교시설 활용에 있어 학교가 안고 있는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해야함. 학교장의 판단에 의한 개방 여부의 문제에서 벗어나 오전등교 8시 이전 사용, 방과후 5시 이후 사용 시 누가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 있음. 도민을 위해 도가 책임져야 함. 이러한 기본적인 제도 개선 후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요청해야함.
- 교육청에서 강당 건립, 기능보강은 도에서 지원해야함. 체육시설은 균형발전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한쪽에서는 불합리한 조건에 놓인 지역이 있음. 체육문화시설로써 점검하고 학교가 시설공사를 요청하면 바로바로 예산 지원해야함. 모든 문제를 “코로나19 해결된 후 무엇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함. 적극적 행정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됨.

[질의 : 충청남도의회 김연 의원]

- ⇒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최대한 자료를 제공할것음. 인프라구축 업데이트 하고 있음. 이 또한 제공할것음. 교육청 관계자와 만났는데 코로나19로 주춤하고 있고 시기가 지나고 나면 개방할 수 있도록 도민측면에서 강력하게 노력하고 예산지원에 힘쓰겠음.
- ⇒ 주기적인 데이터 관리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음. 금번 토론회의 장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논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것임.

[답변 : 체육진흥과 노태현 과장]

-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이 통합되면서 일반시민을 위해서 공공 체육시설 이용하지만 학교체육시설을 많이 활용함. 학교장의 유형에 따라 개방, 비개방이 반복됨. 학생을 키워야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음. 1인 1스포츠, 1인 2스포츠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장에선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움. 교육청 관계자도 함께 토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함.
- 우리도는 장애인 다목적체육시설이 많지 않음. 다목적체육시설은 비장애인도 많이 사용함. 다목적시설 건립하려면 100억에서 200억 소요됨. 게이트볼 형태의 시설 먼저 설치해 주고, 게이트 2개정도 들어가면 장애인도 수업을 할 수 있음. 티볼, 탁구 베드민턴 등이 시설을 활용하여 다목적체육시설을 순차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음.

[질의 : 서산시체육회 최기을 사무국장]

- ⇒ 교육청 관계자도 참석했으면 정확한 답변,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을텐데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 꼭 챙기도록 하겠음.

[답변 : 충청남도의회 정병기 의원]

- 충남체육회 예산확보 수준이 전국 시도 중 15번째라고 원고에 제시되어 있음. 체육관련 예산편성 근간이 궁핍함. 전국단위 하위 수준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풍족한 예산수반이 필요해 보임.

[질의 : 이석호 도민]

- ⇒ 국민체육진흥법이 근간이 되고 설립된 대한체육회, 각 지회, 즉 충남체육회, 장애인체육회 공공기관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됨. 체육관련 예산의 대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지원하고 과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예산은 일부만 대한체육회에서 지원하고 있음.

[답변 : 체육진흥과 노태현 과장]

- 충남 기대수명, 건강수명 관련하여 복지정책의 혜택 받을 수 있는 연령을 구분해 주었으면 좋겠음. 수혜 받을 연령이 아닌 영유아, 노년층 제외하고 데이터 확실하게 구분해 줬으면 더 확실한 데이터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함. 공공체육시설 대비 민간체육시설업이 감소되고 있는데 재부활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었는지? 공공체육시설 활용방법은 없었는지? 또 한 가지는 이 자리에서 이스포츠 추가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생각함.
- 학교체육시설 개방문제 대두되고 있음. 천안 동면 천동초는 학생수가 8명, 교사 12명으로 알고 있음 골프연습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음. 벤치마킹 필요함. 엘리트 체육에 대해선 언급되고 있지 않음. 충남의 체육전문특성화 고등학교인 논산의 충남체고가 있음. 체고를 선호하는 학생이 줄고 있음. 논산지역에 학교가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고등학교 도시인근 이동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여기에 부합해서 경기, 서울권 엘리트 체육할 수 있는 학교가 없음. 충남도에서 추진하여 학생유인책으로 활용하면 좋겠음.

[질의 : 도민 이석호]

⇒ 생애주기별 질문이었는데 복지대상은 특정대상이 아닌 전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 신체활동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10대 이하 영유아 자료가 부족함. 유치원, 어린이집 스포츠활동 시설 유무, 수업 유무 등도 파악이 잘 안됨. 어르신부터 충남은 집중해서 하고 있음. 전생애주기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황, 인식관련 요구 자료를 파악하고 추진되어야 함. 민간체육시설업 감소된 사유는 건물, 현황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음. 공공서비스시설이 확대되고 코로나19로 민간체육시설업이 감소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함. 민간시설업은 헬스장 등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지만 바우처, 도차원의 클럽 유입 형태 지원 등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음.

⇒ 이(e)스포츠는 조건을 다 가졌는데 다음기회에 말씀드리겠음. 다방면의 클럽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함. 학교체육시설만으로 스포츠클럽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편리성만 강조한 형태라고 생각함. 농어촌의 경우는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하여 스포츠클럽을 형성해야함. 그래서 공간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임.

⇒ 전문스포츠의 경우 전문스포츠인이 감소하였고 전국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일반인도 전문스포츠인으로 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음. 선진국 관점에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답변 : 충남연구원 김민준 초빙책임연구원]

⇒ 엘리트체육 매우 중요하게 생각함. 충남체육고등학교 이전 관련 문제는 도교육청과 체육회에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교육청 관계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 입장을 곧 표명할 것으로 생각함. 초중등교육법과 금년 3월 ‘충청남도

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마련되었음.
실질적인 행정 추진에 별 무리 없다는 말씀을 드림.

[답변 : 충남체육회 체육진흥부장]

4 마무리 발언

- 체육의 범위는 상당히 넓음. 학교, 아동, 청소년, 전문, 장애인, 어르신 체육 등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체육을 한자리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음.
- 금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문체육이면 전문체육, 생활체육이면 생활체육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행정문화위원회, 양대 체육회, 체육진흥과와 논의의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음.

[마무리 발언 : 충청도의회 정병기 의원]

III 토론회 결과

<도출과제>

- 충남도민 생활체육관련 정기적,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한 데이터 기반 마련 방안
- 수요자 중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방안
- 민간체육시설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결 과>

- 충남 체육시설 이용실태조사 연구의 지속성, 연속성 관련 정책적 당위성 도출
- 공공체육시설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 방안 제시
- 수요자 중심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방안 도출
- 민간체육시설업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제시
- 다양한 마을중심형 스포츠클럽 구성과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 도출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소하천 수질 개선 및 생태환경 보존 방안 마련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20. 10. 22.(목), 14:00~16:00 / 당진시청 해나루홀〉



I 총 평

(이계양 의원)

- 금번 토론회는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청남도 소하천 수질 개선 및 생태환경 보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 이 의원은 상임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과 함께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내 소하천 녹조현상을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 효율적인 녹조제거 장비를 활용한 수질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통합물관리정책 및 생태환경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 녹조제거의 한계성을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의 전환과 예산확보 및 도차원의 선제적인 수질관리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부와 충청남도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그린뉴딜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

〈김영일 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물환경연구센터 전임연구위원〉

- 조류(algae)의 정의 및 종류와 특징 등 녹조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활용해 진행함.
- 분류상 남조류, 녹조류, 규조류, 와편조류, 유글레나조류, 갈색편모조류 등 중 녹조현상(algae bloom)은 강이나 호수에 남조류가 과도하게 성장하여 물의 색깔이 짙은 녹색으로 변하는 현상이며 통상 녹조류와 구별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녹조를 녹조현상이라고 설명함.
- 남조류는 대기중에 질소가스를 유기질소로 전환하여 저장하는 질소고정 능력이 있어, 독성 및 냄새물질 생성 및 분비하여 수돗물, 어류 및 농산물 안전성 문제 발생 우려가 있음.
- 환경부는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남조류 4종(마이크로시스티스, 아나베나, 오실라토리아, 아파니조메논)을 유해남조류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
- 주요 발생원인으로 질소, 인 등 영양염류(특히, 인이 제한인자)와 생활하수, 강우에 의한 축산폐수, 비료유입 등 비점오염원오염물질 유입과 적절한 수온(20~30℃), 일사량, 유속이 있음.
- 특히, 인은 바닥층에 흡착됨으로써 호소바닥 오염을 야기하기 때문에 인의 직접제거는 호소 부영양화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됨.
- 녹조현상이 우리생활에 미치는 영향으로 ①상수원 오염, ②공중위생 악화, ③경관가치 훼손, ④동물건강 손상, ⑤경제적 손실, ⑥생태계 파괴 등이 있음.

- 이와 같은 녹조현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조류경보제**를 상수원 호소하천 수질관리를 위해 '98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예시로 대청호와 보령호, 금강본류의 녹조발생현황에 대하여 언급함
- 대청호 녹조발생 현황
 - 98년 조류경보제 시행 이후 거의 매년 경보 발생(99, 14 미발령)
 - 4~5월부터 수온이 높아지면서 유해남조류 출현 이후 강우 시 유입된 영양염류로 세포수가 급증하여 7~10월 경보 발생
- 보령호 녹조발생 현황
 - '10년부터 조류경보제 시행이후 2차례('10, '17) 경보 발생
 - '17년 저수량 부족, 금강도수로 가동으로 경보(관심) 42일 발령
- 금강본류 녹조발생 현황
 - 금강정비사업 이후(2012~)금강 보 구간 중심으로 매년 녹조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으나, 보 수문 개방 이후 녹조 현상 발생 감소
 - 2018년 이후 세종보 및 공주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체류시간 88% 감소, 유속은 최대 232% 증가하여 녹조현상(유해남조류 세포수) 현저히 감소
- 녹조현상 저감기술에 대하여는 물리적 기술과 화학적 기술, 생물학적 기술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함.
- 물리적 기술은 수체순환, 산소공급에 따른 수체 혐기화 방지 및 물리적인 조류 수거 등이 주요 제거 원리인 ①태양광 물순환장치, ②수류확산장치(수중), ③취수원 조류유입 차단용 살수, ④수상녹조제거장치, ⑤조류차단막 설치 및 하층 선택취수등을 제시함. ➡ **경제성 부족**
- 화학적 기술로는 산화제의 살균효과를 이용하는 ①살조제 투입이 있으나 어류 생태 독성 등에 대한 우려가 존재 ②인 제거물질을 투입하여 수중의 인과 결합을 통해 침전 제거, ③황토 등 생태영향을 최소화하는 자연물질 투입
➡ **화학물질 살포에 따른 수질, 수생태계 영향 검증 미흡**

- 생물학적 기술로는 ①식물 등을 이용한 오염유입 저감, ②식물체의 천연성분을 이용한 녹조제거, ③조류를 먹는 천적(물벼룩 등) 이용을 제시함.

➡ 실제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증 미흡

- 녹조현상 저감기술의 한계로는 녹조 제거 시, 제거 속도보다 녹조 확산속도가 빨라 대규모 녹조현상 지속기에 녹조 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막 설치, 녹조 직접제거, 생물학적 처리방법 등 현존하는 녹조 제거 기술의 효율성이 낮음

➡ 실질적으로 하천에 적용 가능한 기술 부재, 개발 기술의 경우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실험실 규모의 기술이 대부분임

- 녹조대응 및 관리방안으로는

- 현재 추진 중인 “조류경보제”는 상수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하천 및 호소 등 공공수역의 녹조발생 현황 파악에 한계가 존재함.
- 국가 차원에서 연구 및 개발되고 있는 다양한 모니터링 기술(메조코즘, 초분광영상 등)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
- 녹조 우심지역(오염원 집중 분포지역)내 존재하는 하천 및 농업용 저수지등의 집중적인 조사 및 분석을 통해 Hot-spot지역 설정 및 집중관리
- 특히, 축산오염원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지역의 하천 및 농업용 저수지를 중심으로 집중조사 추진 필요
- 강과 호수 등에 오염물질의 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공하수시설, 폐수배출시설(폐수배출업소),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집중적인 관리 필요
- 농지에 살포되는 축분의 과잉 시비, 방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감시수단을 활용하여 집중 점검을 통해 유출 억제를 제시함.
-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저감을 위해 생태저수지, 생태습지, 생태둑병 등의 비점저감시설 설치

-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다목적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제안함.
- 하지만, 녹조 발생 및 관리를 위한 주체가 기능적으로 다원화되어 있어 녹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존재함
 - ➔ 유역관리 차원에서 녹조를 관리하기 위한 추진체계(조직)의 일원화 필요

2 지 정 토 론 (5인)

① 조한영 (당진시 환경정책과장)

- 최근(2019~2020) 도내 담수호 수질 현황 - 삼교호(4등급➡3등급), 석문호(4등급), 대호호(5등급➡5등급) 및 주요하천 수질 현황 BOD(mg/L) - 남원천(3.9➡3.7), 역천(2.8➡2.1), 당진천(3.0➡2.0)을 설명함.
- 수면관리자별 녹조 예방 방안으로 하천은 관할 구역의 시·도지사
 - ➔ 녹조발생원인 중 오염원별 유입부하량 감소사업 추진저수지·호소관리자 인 한국농어촌공사는
 - ➔ 호내대책으로 퇴적층 준설, 농촌비점저감 수질개선사업 추진
 - ➔ 녹조발생 모니터링 및 녹조발생 대응해야 함
- 녹조제거 방법으로 ①물리적방법, ②화학적 방법, ③생물학적 방법이 있으며
 - 이중 인공습지는 비점오염원을 잡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당진도 추진 중에 있으나, 관리의 어려움으로 실패사례 존재
 - 물벼룩배양시설은 농어촌공사에서 시범사업 추진하였으나 실패사례 존재
- 현재 추진중인 수질개선 대책으로 정책적인 삼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 배출농도 규제방식의 수질관리로는 수질개선이 어려워 오염물질을 배출 허용량 이하로 관리함
 - ➔ 민관협력으로 담수호 수질개선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 농촌비점오염원을 줄이기 위한 민간단체와의 관리협약은 있긴 하지만 매년 비점오염부하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70% 상회예산 그 중 농업비점과 축산비점이 약 80%를 차지함
 - ➡ 농업단체, 축산단체, 농협중앙회와 연계하여 사업지원 및 참여유도
- 향후 추진계획
 - 삼교호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건의
 - 농촌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농·축산단체를 통한 비점저감사업 추진 및 홍보
 - 녹조유발 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수질개선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
 - 축산비점오염원의 유입을 줄이기 위하여 인허가 및 지도단속 강화
 - 녹조발생 억제 및 제거를 위한 검증된 방법이 있다면 충청남도 및 농어촌공사와 협의하여 적극 참여를 제시함.

② 안동권 (씨엠스코주식회사 대표)

- 기술적인 수질개선 방안과 녹조해소를 위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제언
- 녹조저감 기술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기술적 문제점을 녹조처리 방법별로 개선하여 실효적이고 현실적 개선책에 중점을 두고 해결 방안을 제시
- 녹조 제거 시, 제거속도 보다 녹조 확산 속도가 빨라 대규모 녹조현상 지속
 - ➡ 시간당 2km 이동, 1일 10ha의 녹조제거 및 녹조회수가가능한 대규모 설비 활용
- 녹조확산 방지를 위한 차단막 설치, 녹조 직접제거 등 현존하는 녹조제거 기술의 낮은 효율성 지적과 대안 제시.
 - ➡ 실효성 있는 녹조 직접제거 기술인 녹조회수설비 활용(1일 최대 10만평)
 - ➡ 바람과 물결을 따라 이동하는 녹조 이동경로에 대형 유류차단막을 설치하여 효과적이고 대규모 녹조를 회수할 수 있는 기술 활용

- 실질적으로 하천에 적용 가능한 기술부재, 개발기술의 경우 현장 적용성을 확보하지 못한 실험실 규모의 기술이 대부분임.
 - ➡ 소하천 유입수의 수질개선을 통한 선제적 녹조예방(소하천 유입수는 제도적 관리사각지대인 농촌지역에 밀집된 농·축산농가, 생활오폐수 등 고농도 비점오염원으로 충남도의회 소하천 수질개선사업의 연구에 기술 및 장비 제공)
- 물리적 처리방법 : 경제성 부족
 - ➡ 녹조회수설비를 이용한 대량의 녹조 회수(시간당 약1톤 수거)
- 화학적 처리방법 : 녹조제거를 위한 화학물질 살포에 따른 수질, 수생태계 영향 검증 미흡
 - ➡ 융복합기술 활용한 녹조제거 기술 활용 (GEN-CM수질정화공법)을 제시
- 정부는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담수호 그 자체 수질개선 예산을 별도의 책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 실효성 있는 수질정화설비이나 녹조회수장치와 같은 녹조저감 장치 등을 투입하여 수생태계가 회복 가능하도록 변화된 수질관리 정책 주장
- 호수나 하천의 수질악화와 녹조 해결방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함께 노력할 때 실효적인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③ 최연숙 (당진시의회 의원)

- 산업화와 도시팽창으로 인한 산업폐수, 생활하수, 농경폐수, 축산폐수 등 오염물질의 집중화 현상과 배출량의 증가로 정화되지 못한 오염원들이 무분별하게 배출됨.
- 이에 대책으로 하수처리 및 산업폐수 등 수질개선을 위해 수년간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으로 미처리된 오폐수는 이미 하

천을 오염시켰고, 지자체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고 처리한다고 해도 이미 파괴된 생태계의 복원은 어려운 현실임 .

-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하천 및 담수호 등 수질보호 및 개선 및 관리로 지속적인 수질관리 정책의 수립이 시급함.
- 또한, 일상생활과 가정의 영역에서 수질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인식개선과 환경을 보호하려는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됨.
- 주거단지에 근접한 하천은 생태와 환경과 문화시설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소규모 하천의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함에 있어 매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지자체의 담수호와 하천에 수질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 하천 및 담수호의 오염원 조사, 토지이용현황 등의 기초 데이터를 수질 및 생태 실태조사를 통해 하천환경지도를 제작
 - 소하천의 특성에 맞는 수질개선방안을 강구하여 현재 추진중인 개선사업에 접목 후 수변공간은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성공적인 수질관리 사례를 만드는 것이 우선임을 제시함.
- 현재의 수질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본 후 생태적으로 건강한 소하천과 담수호 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 삼교호의 수질관리를 위해 당진시는 많은 예산투입과 노력으로 수질등급을 상향하였음.
- 소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실태조사를 통한 오염원 분석 및 데이터를 토대로 지역적 특성에 따른 유지관리와 운영시스템의 통합적 관리추진체계의 일원화와 연구와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

④ 문경민 (환경감시국민운동본부 당진시지회장)

- 환경운동단체의 시각에서 녹조예방 및 수질오염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론적 대안을 제시함.

- 먼저 녹조현상 주원인은 느린 유속,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물질의 유입, 수온상승, 일사량 증가, 생활하수·산업폐수·축산폐수의 증가 및 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의 증가 때문이라고 주장함.
-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98년부터 녹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상수원, 친수활동구간을 대상으로 조류정보를 운영하고 있고, 남조류 발생 수준에 따라 관심, 경계, 대발생 3단계로 정보단계를 설정하고 정보하고 있음.
- 조류현상의 예방은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 생활습관을 통해 수질오염과 녹조현상을 일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주장함.
 - 친환경제품 우선 사용 권장 및 분리수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수거 등 지속적인 관심으로 교육
 - 생활폐수 특히 농어촌지역의 정화조의 무단 배출 금지
 - 적정량의 퇴비나 비료를 사용, 특히 비오기 전에는 퇴비나 비료 사용을 자제해 주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요망
- 삼교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당진시에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협약으로 천안천, 남원천, 곡교천 등 현재 5등급에서 2030년 3등급을 목표로 예산투입을 하고 있음.
- 당진시는 삼교호가 농업용수의 4등급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용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수질개선을 하고 있음.
- 평택호와 삼교호를 연결하는 도수로는 당진의 친환경농업에 저해가 되는 원인으로 평택시와 당진시 등 협력을 통해 수질개선 정책을 추진해야 함.
- 산업도시로서 최대의 쌀생산지와 축산농가가 있는 당진시는 소하천 및 지방하천 담수호 수질개선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임.
- 이는 지자체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함. 지자체, 환경단체와 주민이 함께 수질개선에 동참하고 협력적 네트워크로 연결된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함. 무엇보다 시민들의 인식개선이 중요함.

3 자유토론 (질의답변)

- 기존 수질개선 사업이 막대한 예산투입에 비해 효과적 못한 점의 개선을 위해 새로운 기술의 사업을 도입할 의지가 있는가? [질의 : 문경인 당진시 지회장]

⇒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개선사업 대부분이 정부예산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의 친환경적 방침에 맞고 검증된 신규기술일 경우 적극 도입 검토 하겠다.

[답변 : 조한영 당진시 환경정책과장]

⇒ 호소로 유입되는 오염원을 소하천에서부터 선제적으로 차단, 관리하여 녹조현상 발생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충설명 : 안동권 씨엠스코 대표]

- 충남연구원은 녹조예방 및 소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나?

[질의 : 최연숙 당진시의회 의원] ⇒ 국가 및 충남도 정책연구를 위해 매년 도내 160개 하천에 대한 수질조사를 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물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있음.[답변 : 김영일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전임연구위원]

- 녹조발생 후 처리보다는 성장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면 되지않나?

[질의 : 이계양 의원]

⇒ 제어가능한 발생인자인 인의 농도와 체류시간은 지역에 따라 그 현상을 달리하여 많은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필요함, 또한 호소나 댐의 사용목적인 농업용수 및 식수 확보와 근본적으로 대치되는 딜레마가 발생함. [답변 : 김영일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전임연구위원]

- 예산은 최대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에 투입된다. 녹조발생인자 중 제어가능한 인의 농도를 효과적으로 중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질의 : 이계양 의원]

⇒ 호소바닥에 오염물질이 퇴적됨으로 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학적인 방법과 기계적인 방법을 융합하여 인의 농도를 혁신적으로 개선시키는 장비를 개발하였다. 수질개선에 관한 예산을 반영 중 장기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할 시기이다. [답변 : 안동권 씨엠스코 대표]

-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호소의 준설사업의 효과에 대해 의회와 농어촌공사간의 의견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견해는?

[질의 : 조한영 당진시 환경정책과장]

⇒ 대형 호소는 준설토를 처리하는 양보다 토사유입량이 많으면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기간에 피해지역을 집중적으로 준설 시에는 효과가 있으나 전체 호소로 확대한다면 무의미하다고 생각함

[답변 : 김영일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전임연구위원]

- 녹조제거기술에 있어 발생속도보다 처리속도가 빠르다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전문가로서의 견해는? [질문 : 오인환 의원]

⇒ 대청호 사례에서 본 결과 아직 기술적으로 부족하기보다 검증된 사례가 없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에 모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봄.

[답변 : 김영일 충남연구원 물환경연구센터 전임연구위원]

⇒ 전체 녹조현상의 20%~30%만 처리해도 남은 녹조는 자연의 자정작용으로 해결됨 따라서 다년간의 연구결과 개발한 효율성 높은 대규모 설비를 활용해 자정능력의 한계를 넘은 부분만을 제거하는 것이 녹조제거의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됨. [보충설명 : 안동권 씨엠스코 대표]

III 토론회 결과

〈과 제〉

1. 효율적인 녹조제거 장비를 활용한 수질개선 방안 도입
2.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연계한 중장기적인 녹조관리 정책 수립

〈결 과〉

1. 기상이변에 따른 가뭄 및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여 충청남도의 선제적 예방과 대응이 중요함.
2. 최근 삽교호 등 호소의 녹조 발생으로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주민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3. 소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녹조현상의 선도적 관리가 중요함.
4. 녹조발생에 대한 원인조사 및 오염원 유입에 대한 대책강화 필요
5. 효율적인 신기술을 적용한 녹조제거장비의 도입을 강구해야 함.
6.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각 시군으로 다원화된 관리체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7. 대청댐, 보령댐 등 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전문가의 연구조사 및 안전하고 현실적인 녹조제거장비를 활용을 고려.
8. 우리도의 수질관리 정책이 정부의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의 도민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함.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추가 토론회 준비
 -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충청남도 하천과, 당진시 환경정책과,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금산 인삼산업의 미래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20. 10. 28.(수), 14:00~16:00 /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



I 총 평

(김복만 의원)

○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금산 인삼시장 활성화 및 인삼약초 산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된 토론회로

- 토론 참석자들은 도의회 차원에서 시장 활성화와 금산 인삼산업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져준 것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 인삼 관련 재배자 등 유관단체의 관계자가 토론자로 직접 참여하여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금산 인삼산업의 세부적인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는 점과

- 국제적으로 명성을 드높힌 금산인삼이 이제 국가산업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정책과 더불어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시됨

⇒ 토론회에서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및 기관 등과 공유하여 도정에 반영되도록 하고, 향후 계획과 추진상황을 지속적 관리하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1인)

▶ 박지흥 (충청남도 식량원예과장)

- 고령화가 심화되고 젊은 세대의 유입이 감소됨에 따라 농촌현장의 인력부족
- 전국 단위의 인삼산업 위상은 유지하고 있으나 확대발전의 가능성은 한계점에 노출되었고 코로나19의 장기화된 상황속에서 비대면 경제 추세가 인삼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고려인삼의 종주지로 전국 수삼의 70%가 유통
 - 수삼기준 생산액 8천1백억원, 수삼 3천톤, 홍삼으로 16천톤 소비
 - 사업투자는 단일품목 중 최고수준 불구 효율적 계획투자 미비
- 이미 실명제 등 다른 지자체에서 정착되어 시행중인 만큼 속히 정착되어 인삼 안정성에 대한 불식을 없애야 함
- 지금도 장날에 주기적으로 실명제 등을 확인하러 다니는데, 강제가 아닌 자율적으로 완료되었어야 하며 더 이상 행정력을 낭비할 시간이 없음
- 수삼만큼은 전세계적으로 금산이 최고이며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럽지만 아직 단 한번도 실명제, 이력추진 등이 정착되지 않았음. 그동안 정치적 논리로 접근된 것이 가로막은 원인이며 시급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유통센터라는 재산이 있기에 필요할 경우 주식회사 등 기업을 만들어서 제대로 힘을 모아 자생력 있는 그림을 그릴 필요
- 낙후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재정을 5년 단위로 집행하는데 금산은 인삼관련

사업이 확정됐지만, 어떻게 장기적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지역의 전략은 부족한 실정임. 그러므로 중장기적인 전략을 군민들 앞에 사업계획을 세워야 함

[2] 지정토론(5인)

① 정승철 (충남인삼산업발전위원회 위원장)

- 금산군민들은 인삼 하나만 바라보며 지금까지 재배해왔으며 금산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인삼관련 정책은 무엇인지 도청에서 목소리부터 경청하고, 어떻게 정책, 재배방법, 행정 등을 적절히 활용시켜 발전을 이룰지 고민해야 함
-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금산을 가지면서 금산인삼이 최고라고 홍보하고 다녔고 오늘날 금산인삼의 명성이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말 할 수 있음
- 인삼에 대한 법률에서의 이중규제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약사법 개정 작업 등 인삼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도 차원의 개정 논의 등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
- 금산인삼이 발전하기 위해선 유탄시설물이 들어와서는 안되며 인삼을 복용하고 구입했을 때 청정지역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이라고 홍보할 수 있어야 할 것

② 고현대 (금산군인삼약초명품화추진위원회 위원장)

- 현재 인삼소비량과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니 백삼, 수삼, 홍삼 등 제조 생산이 줄어들고 연관 사업인 백작소, 제조장비, 종사원 등 모든 부분에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있음
- 택배업이 발전할수록 직접 금산을 찾는 관광객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며,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인책을 개발하고 금산에 와서 소비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 중앙정부인 농식품부에 인삼 관련 지원을 요청하려면 대안마련과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하는데 하루, 월간 수삼 판매량 등 어떤 변화의 추이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부터 제대로 통계가 잡히는지 의문

- 금산군에 중립적 인사들로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수시로 인삼관련 현안 및 대책을 강구하고, 한예로 과거 인삼에 농약 검출 등 이슈가 있었을 때 관계 당국과 협의할 수 있는 대응팀이 있었다면 이슈가 되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음
- 이번 충남도 균특예산이 280억 가량 되는 것으로 아는데 도와 금산군에서는 인삼정책과 관련하여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충분한 토의와 심사를 해서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③ 안기전 (금산군의회 의장)

- 현재 제)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는 지역사회와 인삼산업발전을 위해 설립 되었지만 기존의 기초 효능 중심의 연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으로써 진흥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생산, 제조가공, 유통, 수출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기대수요를 충족하도록 해야 함
- 연구중심의 개념에서 탈피하여 금산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고 이제 산업중심으로 개편, 조정으로 역할과 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만족도 상승 및 인삼산업 발전취지에 부합하도록 조정이 필요함
- 인삼 안정성 확보는 인삼시장의 성공의 열쇠이며, 인삼을 재배하고 유통 전에 안정성 검사를 통해 금산시장에서는 제한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야 함
- 재배 농가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정책과 결합시켜 성공적인 산업으로써 모델 발굴을 통해 위기의 농촌 부활을 모색해야 함

④ 도은수 (충부대학교 한방보건제약학과 교수)

- 과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지자체 및 인삼산업 관련 주체들의 차원에서 고려인삼산업 발전방향에 대해 토론 및 검토를 해왔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
- 재배·생산분야에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원료심의 생산성 향상이 주요 목표가 될 것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전한 재배(온도, 수분, 농약 등)와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

- 제조·가공분야에서는 기업의 우수한 원료삼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독려해야 함. 안전한 원료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유통·홍보분야에서는 유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일반 소비자나 제조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전략의 수립, 수출 증대를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함
- 충남도차원과 금산군차원의 발전전략을 잘 연계해서 시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고, 발전적 전략 요소들은 무엇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어떻게 찾을 것인지 필요하면 기관 설립도 고려해야 할 것.
- 인삼·약초로부터 식의약품 소재 개발(대학/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관련업체)
- 안전하고 우수한 원료삼 생산을 위한 GAP인증인삼 활성화(인증인삼의 재배면적 확대를 위한 지원/홍보/유통체계의 확립)(충남농업기술원 인삼약초연구소/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 수삼 및 인·홍삼제품 국내소비촉진 및 수출의 제고
 - ▷ 세척시스템 시설 구축(공공용도)/세척수삼의 국내 소비 및 수출 제고
 - ▷ 제품의 고품질화/고부가가치화
 - ▷ 수출 및 유통 지원기구구성/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활용
- Smart farm/Smart factory 도입 및 구축
 - ▷ 표준화 system 도입 : 충남인삼약초연구소/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 ▷ 노동력 절감/제조공정의 표준화/신뢰성 있는 제품생산
 - ▷ 표준화 공정개발 및 기준 제시(생산, 가공, 포장공정의 표준화)
- 고려인삼의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국내외 임상결과 자료수집
- 충남금산 고려인삼제품의 홍보/제조환경개선/신뢰성확보

⑤ 조재한 (경희대 한방바이오센터 이사)

- 한국에서 생산되는 인삼은 크게 홍삼과 백삼으로 한국산 백삼은 이미 세계

에서 시장성이 없으며 홍삼 역시 인건비, 가짜 홍삼 범람, 품질격차 감소 등으로 인하여 해외 시장점유율이 감소하고 있음

- 국내 인삼 가공 시장은 대기업 중심의 일반 가공식품판매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단순 가공식품 만으로는 FTA 등 시장개방에 따라 저렴한 인삼 제품과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 유통의 70%는 금산이지만, 매출 비중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쉬우며, 무분별하고 전문화되지 못한 가공등으로 금산의 이미지하락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전체적인 유통과 판매 과정에서 고유 브랜드화 하는 작업을 모색할 것
- 따라서 기존 제품군과 차별화된 다양한 연구개발 기술들을 접목하여 새로운 아이디어 상품 출시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시장을 선도해야 할 필요가 있고 연계하여 부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인삼 신소재 개발도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어 보임
- 국내 3대 약령시장으로 불리는 금산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삼 제품(수삼, 건삼, 홍삼 등)과 각종 약초 및 한약재 시장을 홍콩 등 선도적인 유통시장을 적극 벤치마킹하여 필요하다면 도입하는 등 추진 할 필요

[3]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Q. 인삼 관련 공론화를 통해 지속발전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질문 : 김관엽 금산수삼센터 대표이사]

- 인삼에 대한 문제는 금산만의 문제가 아닌 비슷한 다른 지자체도 같은 고민이 있는 지점으로, 말씀하신 지속발전과 어려운 재배농가의 고민을 모두 담아 혁신적인 정책과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충남도, 금산군, 재배농민, 유통업자 등 균형발전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답변 : 도은수 교수]

- 생산, 제조, 유통 등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다. 이런 행사도 중요하지만, 미비한 부분을 없애나가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시점까지 기다리지 말고 액션을 취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걱정스러운 마음

[재의견 : 김관엽 금산수삼센터 대표이사]

- 코로나와 수해로 직격탄을 받은 인삼농가가 갈수록 어렵기에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보임. 뭔가 지속적인 컨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의견 제언이 아닌, TF팀이라도 조직하여 인삼약초 산업을 통해 먹고사는 우리 군민들이, 재배농민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도차원에서, 그리고 의회에서든 지속적인 관심을 쏟아주실 것을 부탁

[의견 : 전영석 전 금산군기업인협의회장]

- 오늘 토론회를 통해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단한 번이 아닌, 매년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 과정을 통해 하나씩 금산인삼산업이 발전되고 문제점은 개선 될 수 있도록 나갈 것이며 그것이 필요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여기 계신 모든분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마무리 발언 : 김복만 충청남도의회 의원]

III 토론회 결과

<과 제>

1. PLS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확보에 둔감한 생산 유통업자에 대한 적극적 경각심 고취 방안
2. 오래전부터 고려인삼 시배지로써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부 정책
3. 농가 및 시장유통 관계자 등 모든 인삼산업계의 참여 독려
4. 중장기 정책개발, 제조업체 육성 등 인삼산업 진흥 플랫폼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존 인삼약초연구소의 역할 재정립
5. 2단계 도 균특사업예산 선정에 따른 최적의 재원 사용방법 도출

⇒ 도출된 과제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보

<결론>

- 세계중요농업유산인 금산인삼이 세계시장에서 재부흥 할 수 있도록 인삼 생산농가 포함 모든 관계자들의 혁신이 깃들어야 함
-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 국가전략 식품·건강산업으로의 재편 등 장기적 비전과 세부 추진 전략을 제시할 시점임
- 수삼센터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한 활성화 방안도 고려해야 함
- 2024년부터 시행되는 경작확인서, 잔류농약검사확인, 생산실명제 의무화 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 필요

IV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통보 및 도출 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식량원예과)
 -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생 상담 방향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20. 10. 29.(목), 14:00~16:00 / 서천군 청소년수련관(2층)〉



I

총 평

(양금봉 의원)

- ❖ 이번 토론회는 학부형과 학생,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40여명(비대면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학생 상담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 코로나 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시대, 아동·청소년은 감염병과 관련된 스트레스 외에도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생활의 불규칙, 감정 조절의 어려움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우려 제기됨.
- 이에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학생 상담이 필요하며 어느 때보다 가정과 학교가 연계한 상담이 필요한 때라는데 공감대 형성.
- 의정토론회를 계기로 충남도의회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동체가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한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정서적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새로운 위(wee) 프로젝트 정책사업 마련과 이를 위한 관계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됨.

⇒ 토론회 주요 논의 의견은 관련 부서, 관계기관 등과 공유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2인)

《김소아 한국교육개발원 wee프로젝트연구 지원센터 소장》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부모자녀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스트레스, 우울, 자살생각, 자살시도 등이 최근 급증.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
- 교육부, 여가부, 여가부 산하기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cys-등에서 1388, 문화채팅상담, 사이버상담, 게시판 상담 등 비대면 상담을 서비스했으며 교육부, 교육청 등은 심리지원단, 위기지원단을 신설하여 학생들이 가진 다양한 문제, 요구들에 대응함.
- Wee센터에서는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가 미배치된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스트레스 관리 상담을 진행 △코로나19 관련해서 학교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 보급 △외부기관에는 다양한 상담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지원 △보호자, 교직원 대상으로 긴급 심리 치료를 제공함.
- 충북교육청의 경우 3,213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거나 가족관계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늘어남. 한국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지난해 대비 65%의 상담건수가 늘어남.
- 이에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기본적인 지침을 잘 이행해야 함.

《김은실 남서울대학교 중독재활상담 교수》

-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심리방역’의 용어가 떠오르고 있음. 상담자가 ‘심리방역’의 주체. ‘심리방역’의 주체인 상담사가 역 트라우마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도적이나 기관적인 차원에서 상담자를 위한 △ 정서적 지원 △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 소속감, 유대감, 협의회,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필요.
- 행복한 상담사가 행복한 아이들을 만들 수 있음. 아이들을 위해서 주인공인 아이들을 키워내는 상담사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

② 지정토론 (4인)

① 강제천 (장항공업고 학생생활부장 교사)

- 교권이 추락하고 훈계나 지도에 순응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아 어려움이 있음. 학교에서는 기본적인 학교규칙을 가지고 지도하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이는 옳지 못한 방법임. 그럴수록 아이들과 멀어질 뿐임.
-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상담교사에게 상담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생부와 상담부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함.
- 교사는 상담마인드로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함. 전문적인 상담교사가 상담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이 필요함. 학생지도는 상담부서와 필수적으로 연계해야 상담의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담의 효과는 없고 학생의 변화도 없음을 주장.

② 고규희 (서천교육지원청 Wee센터 전문상담교사)

- 예상치 못한 코로나 시대가 도래 하여 아이들이 모여 웃고 떠들던 학교가 텅 비었고, 온라인 수업이 도입되면서 학생들의 내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아이들의 온라인·게임·스마트폰 중독 현상이 나타남.

-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들이 많아짐에 따라 상담교사, 상담사의 역할이 커짐. 아이들에게 심리적·정서적 안정 지원을 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상담자 자신이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함.
- 경기도 Wee센터 프로젝트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연구로 경기도 내 Wee센터 프로젝트 실무자, 관리자, 일반학교 담임교사 1,8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상담실무자들은 2점대의 낮은 만족도를 보였고 이에 반해 관리자, 일반학급 담임교사는 모두 3점대의 높은 만족도를 보임.(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수원)
- 전문상담사는 센터 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복지 혜택이 없음. 권한은 없고 책임, 의무만 부여된 상태로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음.
- 전문상담사를 위해서 △전문직, 행정직에 시행하는 장기휴가, 자율연수를 전문상담사에게 적용하는 방안 검토분석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전문적이며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 인센티브, 수석교사제 도입 △상담교사 정서적 안정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 지속적 운영 △전문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방학 중 연수 활성화 등이 필요함.

③ 봉희경 (입장중학교 전문상담사)

- 상담은 본래 두 사람 이상이 얼굴을 맞대고 진행하는 것으로 서로의 신뢰를 찾아갈 수 있고, 이는 상담 진행의 매우 중요한 요인임.
- 코로나 이전 wee클래스는 대면상담 방법을 주로 사용함. 그러나 더 이상 대면상담을 고집하는 것이 어려워지며 전화·전자우편·채팅·화상 상담 등 다양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함.
- 심리적·정신적 안정과 치유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가 연계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방안을 구축하고 학생을 발굴, 지원하는 것이 요구됨.
- wee클래스는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며 학교 상담을 위해 담임교사, 학부모, 학교 내 부서 간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임.

④ 박병일 (전 서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

-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wee센터, 청소년센터에 보낼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가족들이 같이 하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함.
- 게임, 핸드폰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함. 아이들이 부모들로 인해 정서적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졌고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 그 어려움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아이들의 행복도가 낮아짐.
-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학부모, 지역사회가 함께 관리 감독 필요.

③ 종합토론(질의답변)

- 고규희 선생님이 발표하신 부분에서 wee센터 근무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는 향후 어떤 법령 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상담교사들은 다양한 형태를 근무를 하고 어디서 근무하느냐에 따라 복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임. 법적인 부분을 먼저 고치는 것이 우선.

[질의 : 화양면장 홍경숙]

⇒ 전문상담사들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처우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적 근거를 제시해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함. 도의회와 교육청과 소통하면서 방법이 잘 풀어져 나갈 수 있을지 한번 검토해보겠음.

[답변 :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양금봉의원]

- 봉희경 전문상담사님의 “담임교사, 학부모, 학교 내 부서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 가정과 학교가 연계한 상담방안이 매뉴얼화 됐으면 함. 학교 전체 상담사 배치가 어렵다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수 많은 학교는 의무적 배치 요구됨.

[질의 : 장항공고 교사]

⇒ 현장에서 느끼는바 전문상담교사가 꼭 필요 따라서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매뉴얼 구축이 돼서 일처리가 필요 방침이 달라져 학생 수에 따라 상담교사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배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감안해 의정활동에 참고하고 교육청과 소통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 충청남도 교육위원회 양금봉의원]

○ 김은실 교수님께서 학교상담사를 위한 지원에 대해 말씀해주셨다. 연수를 사용하여 다음 학기를 준비하고 소진을 방지하는 학교상담교사와 달리 wee센터 전문상담사는 그렇지 못해 어려움. 소진을 위한 프로그램, 자율 연수 등 방안을 마련해주시길 바람.

[질의 : 천안 성거초 전문상담사 신의진]

○ 올해 코로나 19 발생으로 기존 상담방식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 학교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실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 시스템·구조적인 문제가 큼. 모든 일을 할 때 주도적으로 처리하기가 힘들. 법적인 근거가 뒷받침 되어야 함. 상담교사가 상담교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보호가 되어야 하고 조정이 필요.

[질의 : 아산 용화고 전문상담교사 김미숙]

⇒ 공통적인 것들이 전문상담사의 만족도가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는 것 같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힘든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방안을 만들려면 정말 전문상담교사들이 뭐가 힘든지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함. 만족도가 낮은 것이 보수인지, 근무조건인지 아니면 아이들의 심리적인 문제들이 심각해서인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조직 내에서 어떤 차별과 소외감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있어야 제도적으로 보강할지 나올 수 있음. 도교육청에서 전문상담사에 대한 욕구조사,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설문지 등을 통해 조사를 하고 근무조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심리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들의 문제가 심해졌다면 매뉴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연구가 필요함.

[답변 : 남서울대학교 김은실교수]

III 토론회 결과

<과 제>

1. 코로나 19로 인한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정서적 불안감을 예방하고 치유지원할 수 있는 상담지원 관계부처, 기관, 민과의 연계방안 마련 필요
2. 이를 위해서는 위(wee) 상담사들의 역할 증대와 효율적 학생 상담을 위한 복지 등의 처우개선, 상담교사(상담사)들의 역량 신장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 제기.
3.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전문상담사에 대한 욕구조사,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설문지 등을 통해 조사를 하고 근무조건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조사 필요
4. 충남도의회, 충청남도교육청 등 교육공동체는 물론 충남도를 비롯한 자치 단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한 아동·청소년들의 심리적·정서적 상담방안 마련이 요구됨

<결과>

- 아동·청소년 심리적·정서적 불안감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충남도의회, 충청남도교육청 등의 새로운 위(wee) 프로젝트 정책사업 추진체계 마련
- 위(wee)센터 및 위(wee)클래스 상담교사(상담사)들의 업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복지강화 구축 방안 제시
- 코로나 19 상황에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학교-가정-지역사회 간 협력 체계 구축 필요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 통보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 관리
 - 충청남도교육청, 지역교육지원청, 충청남도교육청 wee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내포신도시 10년 문제점과 충남혁신도시 발전방안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20. 11. 4.(수), 14:00~16:00/ 충남도서관 다목적실1〉



I 총 평

(조승만 의원)

- ❖ 금번 토론회는 도민과 관계공무원,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그동안 내포신도시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함으로써 충남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내포신도시의 지속적이고 건설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자리로,
- 지지부진했던 내포신도시의 발전이 혁신도시 지정으로 새로운 발판이 마련되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산업시설이나 공공기관의 유치가 도시 형성의 필수요건은 아니므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하여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

- 홍성군과 예산군의 경계에 위치한 내포신도시의 특성상 공공 시설의 관리나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한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나아가 홍성·예산 통합을 고려해야 함.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함.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1인)

○ 송채규 (청운대학교 교수)

-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는
 - 축사와 악취, 발전소와 건강 등 정주여건의 개선으로 보임.
 - 문제 해결에 일방적 행정을 지양하고 원주민과 이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함.
- 충남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서는
 - 안전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이 보장되는 도시
 - 청년·여성 일자리가 창출되는 도시
 - 랜드마크가 있는 도시
 - 종합병원 및 종합대학이 있는 도시
 - 대중교통이 발달한 도시
 - 문화시설이 발달한 도시
 - 체육 및 오락시설이 갖춰진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함.

- 아울러,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및 시민단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2] 지정토론(5인)

① 최낙준 (내포신도시 상가협회 회장)

- 정주인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지정병원을 유치하고, 자영업을 활성화 해야 함.
 - 우리나라 유일의 국민건강보험 지정병원인 ‘일산병원’의 예를 보면 유입인구 및 유동인구의 증가로 인구여건이 개선됨.
 - OECD 국가평균 자영업비율이 15~17%임에 반해 우리나라는 32%에 이르는 수준임.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내식당을 축소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함.

② 고종민 (내포 아파트연합회 회장)

- 공동주택은 도시 공동체를 일구는 핵심적인 곳이라 할 수 있음.
 - 공동주택 관리에 자치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 역할이 중요
- 공동주택 공간에서 이웃들과 긴밀한 접촉과 유대감 형성을 위해서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서로 상부상조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주민의 적극적 참여 + 좋은 커뮤니티 프로그램)

③ 김기철 (홍성군의회 의원)

- 공공시설 관리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발생
 - 생활쓰레기 처리, 상·하수도 처리, 도로·공원 관리 등
 - 충청남도 + 홍성군 + 예산군 = 내포신도시 공공시설 통합관리기구 설치

- 내포신도시를 건강특화단지로 조성하는 등 명품건강도시로 육성하여 환경이 쾌적한 도시로 조성해야 할 것임.

④ 박병용 (충청남도 내포신도시발전과 과장)

- 도청이전 신도시 그동안의 성과

- 부지조성공사(약 300만 평)
- 아파트 36개 단지(10개 입주, 6개 공사중, 5개 사업승인 완료)
- 이전대상 기관 및 단체 107개 중 103개 완료, 4개 기관 이전 준비중
- 첨단산업단지(전체 분양율 23.8%) 추진 중이며 부지 준비가 완료 되는 만큼 기업유치에 노력하겠음.
- 교통망 연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종합병원과 대학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내포신도시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명품도시로 조성할 계획임.

- 충남혁신도시가 내포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발판이 마련된 만큼 지원계획 마련 등 최선을 다하겠음.

⑤ 안기억(홍성군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소장)

- 내포신도시 운영관리 조직 현황

- 충청남도(내포신도시발전과): 내포신도시 발전계획 전반에 관한 업무
- 홍성군(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시설운영팀, 공원녹지관리팀, 도로관리팀, 공동구관리팀 등 4개 팀이 신도시 내 공공시설 관리업무
- 예산군(내포문화사업소): 내포문화팀, 신도시팀이 신도시 유지관리업무

- 신도시 공공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각각 조직을 구성하여 단일생활권의 행정기관 이원화로 행정낭비와 주민불편, 예산낭비의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하나의 공동기관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있음.

③ 청중토론

○ 공공시설 공동관리기구 구성에 적극 찬성하나, 내포신도시 10년 문제점에 대한 제대로 된 지적이 없어 아쉬움.

○ 내포 아파트에서 보는 내포 뜰과 텅빈 상가의 모습은 너무 대조적이라 상가 활성화가 절실하다 하겠음.

[의견 : 이승원 충남교통안전지도사회협회 회장]

○ 산업시설, 공공기관의 유치가 바로 인구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인구증가에 초점을 두고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함. 아울러,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체계를 구축해야 함.

○ 금번 토론회에서도 가축분뇨·악취가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3년간 같은 주제로 토론을 이어왔으나 아직까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공공시설 공동관리기구보다 홍성·예산 통합이 우선이라 생각함.

[의견 : 김기현 내포집단에너지시설 주민대책위 위원장]

○ 내포신도시 10년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해당사자를 토론자로 참여시키지도 않고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 않는 것이 토론회의 문제점이라 생각함.

○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다른 이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

[의견 : 익명의 홍성군민 축산업종사자]

○ 공동관리기구 설치에 공감하고, 앞으로 토론 기회가 있다면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함.

○ 내포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도의 지원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의문이 들지만, 도시개발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입주민의 인내와 적절한 보상으로 해결 가능하다 봄.

- 내포신도시 평균연령이 40대이고, 자녀들이 학령인구이므로 과밀학급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포신도시가 홍성과 예산으로 분리되어있어 옆 지자체로의 진학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민원제기 과정에 행정을 통일하여 다른 지자체에 미루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지정하거나 홍성·예산을 통합해야 함.
- 내포신도시 내 테마·조형물 등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예산 과집행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계절별 가로수를 선정하여 정비하는 등 도시의 특색을 살렸으면 함.

[의견 : 윤태호 롯데아파트입주자대표, 내포중학교 운영위원장]

- 홍성·예산 분열 대책을 마련하고, 내포신도시 공공시설을 단독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체 만들어야 할 것임.
- 분묘·악취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축산업자 등 생활터전을 닦고 살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시점임.

[의견 : 장영석 내포신도시 주민생계 조합장]

- 내포초등학교의 경우 과밀초등학교라서 진학의 어려움을 겪는 등 정주여건(교육여건 등)이 부족한 상태임.
- 기업유치에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이주하고 싶은 도시, 이주하고 싶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함.

[의견 : 조인옥, 극동 APT 이장]

4 마무리 말씀

- 군의회 차원에서 악취조절 대책을 수립해 청정환경을 조성하고 정주여건 조성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하겠음.

[마무리발언 : 윤용관 홍성군의회 의장]

- 토론자들께서 발표하신 내용과 청중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마무리발언 : 송채규, 발제]

-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지역주민과 만나는 기회를 더욱 자주 갖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음.

[마무리발언 : 최낙준 토론]

-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마무리발언 : 최낙준 토론]

- 주민의 입장에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정이 펼쳐지도록 노력하겠음.

[마무리발언 : 김기철 토론]

- 혁신도시에 공공시설이 조기입주 되어 상권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음.

[마무리발언 : 박병용 토론]

- 내포신도시 방문객과 주민을 위해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음.

[마무리발언 : 안기억 토론]

III 토론회 결과

<도출과제>

-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발전을 위해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 축사와 악취, 발전소와 건강 등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하고,
 - 문제를 해결할 때 일방적 행정을 지양하고 원주민과 이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주민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 및 시민단체를 구성할 필요 있음.

<결 과>

- 내포신도시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새로운 성장 발판이 마련된 만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방점을 두고 지원계획을 마련하는 등 명품도시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음.
- 신도시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홍성군과 예산군이 각각 조직을 구성하여 단일생활권의 행정기관 이원화로 행정낭비와 주민불편 및 예산낭비의 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하나의 공동기관으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있음.

IV 후속조치(행정 · 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협의 및 도출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 충청남도 내포신도시발전과, 홍성군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예산군 내포문화사업소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1호

04



타 시 · 도 의회 주요동향

서울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2021년도 서울시 · 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

대구시의회, 지방소비세율 조정 촉구

대전시의회, 중소기업벤처부 세종이전 반대 항의방문

서울특별시의회

서울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2021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

- 서울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엄격하게 살필 예정 -

서울특별시의회는 2020년 11월 19일(목) 오후 4시부터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하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를 시민단체협의체인 서울시민재정 네트워크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서울시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2021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의 주요한 심사 원칙과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고 있다.

금년도에는 3개 세션으로 나누어, 1부에서는 총론분야로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 토론회를 진행하고, 2부에서는 분야별 토론회로 먼저 행정·보건복지·기획경제·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이어서 환경수자원·도시 안전·도시계획·교통 분야 등 2개로 나누어 진행된다.

총 6명이 주제발표를 하고, 해당분야 서울시의원, 시민단체, 공무원 등 9명이 지정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 올해보다 5,120억원 증액하여 최초로 40조원을 돌파한 40조 47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사업 3,146억원, 민생경제활력사업 7조 7,311억원, 미래투자(포스트코로나) 5,604억원 등 3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 ① S방역 : 방역물품 비축-사전예방-치료 등 감염병 상시예방시스템 구축 등
- ② 민생경제 : 39만 4천개 일자리 창출, 청년 1천명 인턴십, 중·고교 ‘입학지원금’ 지원
- ③ 포스트코로나 : 비대면·혁신성장 인프라 집중투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90% 증액

또한,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10월 30일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구현을 위해 9조 7,4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가 일상이 된 시대에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력 격차 심화와 비대면 학교생활로 인한 소외계층이나 사각지대 발생의 우려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코로나가 일상인 시대가 요구하는 교육의 공공성·책무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초학력향상 지원 강화 △입학준비금 지원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완성 △2기 혁신미래교육 지속적 추진 등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금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재원규모 및 재원배분의 적정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법성, 산출내역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 예산안에 대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위기대응 재정규모

의 적정성, 예산대비 채무비율과 지방채 발행규모,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와 예산반영 연계 강화, 신규사업 시행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여부 검토 등에 대한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로 서울의 침체된 경제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하고,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방역의 범위도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책대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리의 재정이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더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될 것인가가 관건이다. 생계절벽에 내몰린 취약계층, 위기 속에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동과 노인 등 약자의 삶을 좀 더 지원할 수 있어야하며, 나아가 우리 청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빈틈없이 준비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다시금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밝혔다.

※ 불 입 : 토론회 진행순서 및 포스터 각 1부

[불임1]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

2021회계연도 서울시 · 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

☐ 토론회 개요

- 일 시 : 2020.11.19.(목) 16:00~19:00 (180분) (예정)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 (의정관 2층)
- 진 행 : 무청중 온라인 토론회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예산정책담당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대표 이재석)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제 1 부	개 회 식 16:00~ 16:20(20')	○ 개 회 식 -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 인사말씀 -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 송재혁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사 회 전희원 (서울시청 아나운서)
	세 선 I (총론-2021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16:20~ 17:25(65')	○ 발제 발표 - 채연하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남승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지정 토론 - 최 선 의원 (예결위 위원) - 김태명 (서울시 예산담당관) - 엄동환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좌 장 이병도 의원 (예결위 부위원장)
제 2 부	세 선 II (행정자치, 보건복지, 기획경제, 문화체육관광) 17:25~ 18:10(45')	○ 발제 발표 -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 박선영 (문화연대 문화정책센터 팀장) ○ 지정 토론 - 김화숙 의원 (예결위 위원) - 박기용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 김경탁 (서울시 문화정책과장)	좌 장 김경영 의원 (예결위 부위원장)
	세 선 III (환경수자원, 도시안전, 도시계획, 교통) 18:10~ 19:00(50')	○ 발제 발표 - 최경호 (한국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 - 최 영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 지정 토론 - 고병국 의원 (예결위 위원) - 김정호 (서울시 주택정책과장) - 한유석 (서울시 하천관리과장)	좌 장 송명화 의원 (예산정책연구 위원회 부위원장)

대구광역시의회

대구시의회, 지방소비세율 조정 촉구

- 코로나19사태의 지속가능한 대응을 위한 지방재원확보 방안 제시 -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건의안 채택, 국회·중앙부처 전달 예정 -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에서 상정한 「지방재정분권 촉진과 코로나19사태의 지속가능한 대응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조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10월 30일(금) 전남 장성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 본회의 심사에서 채택되어 국회 및 관련 중앙부처로 전달된다.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은 건의안에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에서 지방정부가 선제적인 방역 조치로 전국적인 감염병 대유행을 방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먼저 밝히면서, “코로나19가 일상화된 시대에서는 지방재원확충을 통해 재난대응의 지속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장상수 의장은 “중앙정부가 지방재정분권을 추진한지 4년여가 흘렀음에도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6:24에서 74:26로 개선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개탄하며, “재정분권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방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개정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30%까지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한 곳에 모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이날 대구시에서 제출한 건의안은 협의회 본회의를 거쳐 이후 국회 및 행정안전부와 관련부처에 전달된다.

한편, 장상수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구공항이전 사업’과 같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각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반시설의 확충·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의회가 힘을 결집하여 중앙정부의 투자 및 지원을 이끌어내자고 건의했다.

장상수 의장은 “국가기반시설인 대구국제공항이전 사업은 신공항의 접근성 확보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 할 핵심 사안이므로, 신공항 연결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비 확보에 협의회 차원의 깊은 관심과 공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강조하고, “향후 각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다양한 국가기반시설의 이전 및 확충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협의회가 힘을 모아나 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의회

대전시의회, 중소기업벤처부 세종이전 반대 항의방문

- 중기부 세종이전 계획 철회 강력 촉구 -

대전광역시의회(의장 권중순) 22명 전 의원은 5일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이전 계획 철회를 위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차례로 항의 방문해 성명서를 낭독하고 고위공무원을 면담했다.

먼저 행안부에 항의하기 위해 정부세종컨벤션센터를 방문한 대전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10월 16일 관계부처와의 소통·협업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한다는 이유로 중기부에서 제출한 ‘중기부 세종 이전 의향서’의 즉각 반례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기부 세종 이전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고 수도권 과밀에 따른 부작용을 없애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한다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2017년 김부겸 당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기부 이전논의에 대해 ‘대전에서 자리 잡고 있는 부처까지 세종으로 집적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로 이전논의를 일축한 것은 중기부 세종이전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원칙에 어긋날 것을 우려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중기부 이전 이유 중 사무공간 부족과 타부처와 협업이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는 승용차로 30분 거리에 불과하다”며, “사무공간 확보는 정부대전청사 부지 내 잔여 부지를 활용한 독립청사 신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시의원들은 중기부에 방문해 ‘중기부 세종 이전 의향서 제출’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중기부가 지난 3년간 이전과 관련해 ‘결정된 사안이 없다’는 말을 되풀이해왔으나 대전에 위치한 산하기관 4곳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제외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등 3곳을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2022년까지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며 “산하기관의 세종 이전은 중기부 세종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 그동안 중기부가 해왔던 말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는 1998년 중소기업청으로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해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데 열과 성을 다한 150만 대전시민을 우롱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중기부 세종이전 강행은 국가균형발전 역행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목적에 위배되는 명분없는 행위”라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시의원들은 이날 성명서 발표 이후 관계 고위공무원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통해 ▲ 비수도권 공공기관까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과 세종시 건설 이유에 부적합하고 ▲ 부처 간 협업과 업무공간 부족 등의 이유는 중기부 세종 이전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는 점 ▲ 중기부 이전 시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 ▲ 대전은 많은 벤처기업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어 중기부의 최적지는 점을 강조하며 중기부 세종이전 계획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권중순 의장은 “명분없는 중기부의 세종이전 계획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시기에 20년간 함께해온 150만 대전시민들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중기부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권 의장은 “시의회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중기부 이전을 저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중기부 세종이전 철회를 위해 이번 항의방문 외에도 6일부터 정부대전청사 앞에서 5개 자치구 의회와 함께 릴레이 1인 피켓 시위를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장소에 중기부 이전 반대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또 6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중기부 반대 이전 머리띠를 두르고, 노트북에 중기부 이전 반대 스티커를 붙이는 등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전달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1호

05



최근 제 · 개정 법령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1. 10.] [대통령령 제17540호, 2020. 11. 10., 일부개정]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연구개발업을 하고 있는 경우 적용할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 판단기준을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화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장 신설·증설 시 국가 등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 간 융·복합 현상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가 정성적 판단을 통하여 국내에 신설·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 판단기준 구체화(제3조제1항제2호 신설)

- 해외사업장을 통하여 연구개발업을 하고 있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거나 기존에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전담요원을 증원하는 경우 등에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함.

나. 제품·서비스의 동일성 인정기준 유연화(제3조제3항 신설)

-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는 국내에 신설·증설된 사업장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동일한 소분류에 속하

지 않는 경우 등에도 사용되는 소재·부품이나 생산공정의 유사성 등을 검토하여 사실상 같거나 유사한 제품 등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장 신설·증설 지원 대상 지역 확대(제11조제1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내복귀기업의 사업장 신설·증설 시 토지·공장의 매입·임차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을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함.

충청남도의회
의정정보 2020-11호

06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충청남도 예산군 「지방자치법」제91조2항 등 관련 질의
강원도 고성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관련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과 별개로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으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법」제91조2항 등 관련)

[의견20-0248, 2020. 10. 16., 충청남도 예산군]

【질의요지】

- 가.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과 별개로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으로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나.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다른 부서로 전출되는 직원의 인사에 대해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발령 예정일 전에 상당기간을 두고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 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발령 사항을 사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의견】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과 별개로 지방의회 사무처 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 직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대상으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제105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예산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발령 예정일 전에 상당기간을 두고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발령 사항을 사전에 지방의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게 된 단체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바(각주: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근로자는 「지방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것으로 이러한 근로자의 채용·관리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1호에서 자치사무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의 채용과 관련된 내용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3. 3. 11. 의견제시 13-0061 참조)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을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서는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처·사무국 또는 사무과(이하 “사무처등”이라 한다)에 두는 공무원인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다)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직원의 임용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권한

을 가지는바, 이러한 소속 직원에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지방의회 사무처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명권도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과 지방의회는 서로 분리되어 각각 고유의 권한을 행사하고 사무처등은 지방의회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의 실상과 현실에 기초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력수급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자 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각주: 헌법재판소 2014. 1. 28. 2012헌바216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 법령의 명시적인 규정에 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지방의회 공무원직원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으로 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제101조), 직원에 대한 임면권(제105조) 등을 구체화하면서도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지방의회 의원을 보조하는 지위를 갖는다는 특수성을 고려한 것인바(각주: 제주지방법원 2015. 6. 3. 2015구합145 판결 참조), 비록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임명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근로자가 「지방공무원법」 등 자치 관계 법령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자라는 점과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임면 권한 등을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임명에 있어 특정절차의 적용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조례로 동일한 내용을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0조제2항 단서 및 각 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무직원 임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함으로 인해 의회에 의한 집행부의 통제에 상당한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의회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 인사권의 독립을 통해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2006년 4월 28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7935호로 일부개정되면서 도입된 것입니다.(각주: 2005. 7. 19. 의안번호 제172283호로 제안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우제하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 검토보고서(2005년 11월) 참고)

그리고 추천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한다”는 것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고)하는데, 추천과 임명에 대해 각각 구분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비추어 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받은 자를 반드시 임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임명 여부의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사할 수 있다는 점(각주: 대법원 2009. 9. 24. 2009추53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 의장의 추천권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왔다는 점과 공무원이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된 자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법」에서 공무원인 사무직원처럼 채용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의회 소속인 사무처등에서 근무하게 되므로 의장의 지휘·감독에 대해 공무원인 사무직원과 달리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속되도록 하는 내용과 함께 규정하지 않는 한 지방의회 의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처등으로 전입하는 공무직을 추천하도록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자치단체장의 인사에 관한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 대상에 공무직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임명이란 특정한 자에게 일정한 지위나 임무를 맡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추천이란 어떤 조건에 적합한 대상을 소개한다는 의미이며,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본문의 취지는 지방의회의 사무를 보좌하는 사무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사무직원으로 근무하기에 적합한 자에 관한 지방의회 의장의 의사를 그 임명 과정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임명한다는 것은 신규임용·전입 등을 통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직위를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4. 7. 22. 의견제시 14-0139 참조)

따라서 이러한 추천제도의 취지는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한 측면과 함께 추천권자와 임명대상자 사이의 지휘·감독 관계를 고려하여 추천자의 의중에 부합하는 자를 임명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의미에서 추천권을 의미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관여를 허용한 범위는 신규임용·전입 등을 통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이 아닌 자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군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이하 “예산군조례안”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의회사무과 직원 중 예산군 의회사무과 외에 집행기관의 부서로 진출되는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의회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자에 대한 개입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 및 제105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산군수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 질의 다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상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권의 행사에 있어서 지방

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등을 두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사무처등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의 현황과 실상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력수급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추천권의 적극화, 실질화, 제도화에 필요한 내용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각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 1. 28. 2012헌바216 결정 참조)

이와 관련하여 예산군조례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의회사무과 직원의 인사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을 추천함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인사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인사발령 예정일 전에 상당기간을 두고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 사무처등에서 근무할 사무직원의 추천을 적극적,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인사요인이나 인사시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 필요가 있다는 점과 행정기관 간 업무는 문서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각주: 행정기관 간 업무 수행 시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에 대해 규정하고 구두통보 등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행정기관 간 업무 처리는 문서에 의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 수 있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의회 인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로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라. 질의 라에 대하여

질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무처등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의 현황과 실상에 근거하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력수급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자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무직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회 인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무직원의 임명 절차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군조례안 제6조에서는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사전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비록 인사 발령 전에 의회 의장에게 인사발령 내용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후 절차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바, 해당 규정은 지방의회 인사운영을 위하여 사무직원의 인사 사항에 대하여 미리 알려져 지방의회 의장으로 하여금 의회 사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는 협조차원의 의미로 이해됩니다.

이에 더하여 질의 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기관 간 업무는 문서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군수의 인사발령안에 의장이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사전 통보가 없으면 인사발령 자체를 무효로 한다는 등 군수의 인사권에 사전적.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군수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집행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행정기관 간 협조차원의 행위를 문서의 형식으로 한다하여 그 효력이 강화되거나 변경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질의 요지와 같은 내용은 지방의회 사무처등의 인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 내로 조례로 규정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관련)

[의견20-0207, 2020. 10. 29., 강원도 고성군]

【질의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위해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규정할 수 있는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관련)

【의견】

이 사안의 경우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한 경우(제4호)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제1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제2호) 등으로 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유재산법령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시 원칙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사용료 감면 자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나(각주: 법제처 2017. 3. 23. 17-0069 해석례 참조) 법령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이나 그 범위를 축소·제한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국민에게 주어진 혜택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조례로 법령에 따른 사용료 감면 가능 범위를 제한하려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판결 참조), 공유재산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및 사용료 징수·면제에 관한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사용료 면제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안별로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 여부에 대한 개별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조례로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한 지방의회의 동의에 대해 규정하면서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사전적·적극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법령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을 규정하면서 사용료 면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기간의 범위(5년) 내에서 행정재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조례로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와 관련된 동의에 대해 규정하면서 면제기간을 최대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유재산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에 관한 권한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조례로 행정재산의 사용료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용료 면제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공유재산법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사용료 면제 관련 혜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행정재산 사용료 면제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사전적·적극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표지 설명

충남도의회, KBS충남방송국 설립 총력 투쟁 선언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KBS충남방송국 조기 설립을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

김명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10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충남도민 방송주권 확보 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충남은 높은 고령화 비율로 지상파 뉴스 의존도가 높은 데다, 도 단위 지자체 중 세 번째로 수신료를 많이 납부하는 지역이다.

그러나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지상파 방송국이 없는 곳은 충남이 유일하다.

충남도과 도의회는 2011년 내포신도시에 방송국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40여 차례에 걸쳐 KBS와 정부부처, 국회를 상대로 방송국 설립을 요청해왔으나 9년이 지난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머물러있는 실정이다.

이날 선언문을 대표 낭독한 김 의장은 “KBS충남방송국 설립은 명백한 충남도민의 방송주권 실현”이라며 “KBS는 이제부터라도 220만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방송주권 확보, 재난주관방송사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KBS충남방송국 설립 실현을 위해 220만 도민과 함께 범도민 서명운동 참여, 의원 1인 릴레이 시위 등 방송주권 설립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13일부터 KBS 본사 앞에서 충남방송국 설립을 위한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20. 11. 11.일 보도자료-

MEMO

의 정 정 보

- ❖ 발 행 일 : 2020년 11월
- ❖ 발 행 처 :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
- ❖ 연 락 처 : (041) 635-5124
- ❖ 홈페이지 : <http://council.chungnam.go.kr>

